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상세 설명자료



2024. 5.

관계부처 합동

※ 동 자료는 가입 벌효일 기준(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각 조항별 소관 부처의 참여를 통해 작성되었음.

Contents



I	협정 개요	1
---	-------	---

II	서문	3
----	----	---

III	본문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4
2.	비즈니스와 무역 원활화	5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대우 및 관련 사안	9
4.	데이터 사안	11
5.	보다 폭넓은 신뢰 환경	13
6.	기업과 소비자 신뢰	14
7.	디지털 신원	16
8.	최신 동향 및 기술	17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19
10.	중소기업 협력	21
11.	디지털 포용	23
12.	공동위원회와 연락처	24
13.	투명성	26
14.	분쟁해결	28
15.	예외	30
16.	최종규정	33

IV	부속서 1	36
----	-------	----

V	개정의정서	37
---	-------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상세 설명자료



I

협정 개요

* DEPA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의의) 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통상 협정('21.1월 발효)

- 우리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을 고려, 최초 가입국으로서 가입절차 추진
- 아세안(싱)·대양주(뉴)·중남미(칠) 권역별 주요국과의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구축, 향후 동북아(중)·북미(캐) 및 중동지역으로도 확대* 기대

* 중국·캐나다('22.8월)·코스타리카('23.12월)·UAE('24.1월) 가입개시, 페루('23.5월) 가입의사 표명

▶ (경과) 가입의사 공식통보('21.9월) → 가입절차 개시('21.10월) → 1~6차 협상 ('22.1월~'23.6월) → 가입협상 실질타결('23.6월) → 기탁('24.3월)

- 협정문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의정서(protocol) 발효('24.3월)

※ 4개 조항(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암호기법 ICT제품, 국경간 정보이전, 컴퓨터설비 위치)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 (주요 내용) 原 협정문은 서문·본문(16개 모듈) 및 부속서(분쟁해결절차 관련)으로 구성되며, 개정의정서(protocol)가 일부 조항을 대체

-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 체계 규정

[참고] DEPA 주요 조항

분야	규범	협력
전자상거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없는 무역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특송화물 ▲전자송장 ▲전자지급
신뢰 가능한 디지털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스팸메시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보안 협력 ▲온라인 안전 및 보안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원칙 등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암호화 ICT 제품에 특정 암호기술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협력 ▲핀테크 협력 ▲경쟁 정책 협력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SME 대화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참고 협정문 구조

모듈	내용	세부조항						
	서문	디지털 경제와 기술진보의 중요성 인정, 관련 규범의 협력 진화 등						
1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적용범위(1.1), 다른 협정과의 관계(1.2), 일반정의(1.3)						
2	비즈니스와 무역 원활화	정의(2.1), 종이서류 없는 무역(2.2), 국내 전자거래 체계(2.3), 물류(2.4), 전자송장(2.5), 특송화물(2.6), 전자지급(2.7)						
3	디지털제품의 대우 및 관련 사안	정의(3.1), 관세(3.2),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3.3),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3.4)						
4	데이터 사안	정의(4.1), 개인정보 보호(4.2),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전송(4.3), 컴퓨터 설비 위치(4.4)						
5	보다 폭넓은 신뢰 환경	사이버보안 협력(5.1), 온라인 안전 및 보안(5.2)						
6	기업과 소비자 신뢰	정의(6.1), 스팸메시지(6.2), 온라인 소비자 보호(6.3),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6.4)						
7	디지털 신원	디지털 신원(7.1)						
8	최신 동향 및 기술	핀테크 협력(8.1), 인공지능(8.2), 정부조달(8.3), 경쟁정책 협력(8.4)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정의(9.1), 목적(9.2), 자유 이용 저작물(9.3), 데이터 혁신(9.4), 공개 정부 데이터(9.5)						
10	중소기업 협력	일반원칙(10.1),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10.2), 정보공유(10.3),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10.4)						
11	디지털 포용	디지털 포용(11.1)						
12	공동위원회와 연락처	공동위원회의 설치(12.1), 공동위원회의 기능(12.2), 의사결정(12.3),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12.4), 협력과 협정의 이행(12.5), 연락처(12.6)						
13	투명성	정의(13.1), 공표(13.2), 행정절차(13.3), 재심 및 불복청구(13.4), 통보 및 정보제공(13.5)						
14	분쟁해결	<p>정의(14.1), 목적(14.2), 적용범위(14.3), 주선 및 조정(14.4), 중개(14.5), 중재(14.6), 분쟁해결절차의 선택(14.7)</p> <table border="1"> <tr> <td>부속서 14-가</td> <td>모듈14(분쟁해결)의 범위</td> </tr> <tr> <td>부속서 14-나</td> <td>중개 매커니즘</td> </tr> <tr> <td>부속서 14-다</td> <td>중재 매커니즘</td> </tr> </table>	부속서 14-가	모듈14(분쟁해결)의 범위	부속서 14-나	중개 매커니즘	부속서 14-다	중재 매커니즘
부속서 14-가	모듈14(분쟁해결)의 범위							
부속서 14-나	중개 매커니즘							
부속서 14-다	중재 매커니즘							
15	예외	일반 예외(15.1), 안보 예외(15.2), 와이 태이 조약(15.3), 건전성 예외와 통화 및 환율정책 예외(15.4), 과세 예외(15.5), 국제수지 보호조치(15.6)						
16	최종규정	기타처(16.1), 발효(16.2), 개정(16.3), 가입(16.4), 탈퇴(16.5), 정보공개(16.6), 비밀유지(16.7), 부속서 및 각주(16.8), 전자서명(16.9)						
부속서 1		4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가 창설되지 않는다고 약해 -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제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전송, ▲컴퓨터 설비의 위치 ※ 개정의정서에 따라 동 양해는 효력 중단						
	개정의정서	1.1조(범위)의 개정(1), 3.1조(정의)의 개정(2), 3.3조(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의 개정(3), 3.4조(암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의 개정(4), 4.3조(국경 간 정보전송)의 개정(5), 4.4조(컴퓨터설비 위치)의 개정(6), 14.3조(분쟁해결 적용범위)의 개정(7), 일반조항(8)						

II

서문

- ▶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공은 기업의 발전, 새로운 제품과 시장창출,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기술진보 활용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
- ▶ 글로벌 혁신의 촉매제로서 인터넷 개방구조의 가치와, 디지털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개방형 표준의 역할을 인식
- ▶ 포용적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진보된 기술의 혜택을 모두를 위해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 ▶ 디지털 경제의 진화와 그에 따른 디지털 무역장벽의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규범 및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함을 인정
- ▶ 디지털 경제 관련 문제들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서의 협력에 대한 약속을 확인
- ▶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위한 당사국의 규제 권한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문화적 다양성, 환경보호, 포용적 무역 등의 가치를 재확인

III

본문

1

[모듈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1조. 적용범위

- ▶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
 - 단, 정부 권한 행사 서비스, 금융서비스(전자지급(제2.7조) 제외), 정부조달(정부조달(제8.3조) 제외), 정부가 보유 또는 처리하는 정보와 그 수집에 관련한 조치(공개 정부 데이터(제9.5조) 제외) 등에는 적용이 제외됨
- ▶ [개정의정서 제1조3항] 디지털 경제의 무역과 관련한 원주민의 권리·이익·의무·책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에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제3조), 암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제4조), 국경 간 정보전송(제5조), 컴퓨터 설비 위치(제6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개정의정서 제3조~제6조는 각각 DEPA 제3.3조(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제3.4조(암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 제4.3조(국경 간 정보전송), 제4.4조(컴퓨터 설비 위치) 대체

 - 단, 해당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수단,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
- ▶ 이 협정은 당사국이 체결한 기존 국제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와 공존하며, 협정 간 불합치가 있다고 판단 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 도출을 위해 당사국 간 협의

* ▲WTO 협정 등 DEPA 당사국 모두가 당사자인 협정,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DEPA 당사국 일부가 당사자인 협정을 포함

 - 단, 기존의 어떤 협정이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은 협정 간 불합치에 해당하지 않음

2

[모듈2] 비즈니스와 무역 원활화

제2.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

- * 무역행정문서(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 상품의 수입·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 의하여 또는 수출입업자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 (제2.1조 정의)
- 또한,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하되, 영어(또는 불어나 서반어)로, 기계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 WTO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에 주목하며, 상품의 수입·수출·환적화물 통관 시 요구되는 문서 및 데이터 제출이 가능한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개설·유지

- * 단일창구(single window) : 무역 거래 참여자가 모든 수입, 수출 및 통과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문서를 단일 접수지점에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 (제2.1조 정의)

[참고] WTO 무역원활화 협정 Single Window 관련 내용

- ▶ (주요내용) 회원국은 무역업자가 단일 접수지점을 통해 당국·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설치(제10조4항)
- ▶ (취지) 같은 서류를 여러 부처에 제출해야하는 수출입업자가 단일창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싱글윈도우의 직원이 관련 정보를 필요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는 제도
- ▶ (활용방안) IT 강국, 전자통관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WTO 무역원활화 협정상 단일 창구제도)를 활용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ODA를 통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부 등을 통해 국제표준을 확립, 수출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 ▶ 무역행정문서(위생증명서, 수출입 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 교환 촉진을 위해 각 당사국 단일창구 간 상호 연결 구축·유지에 노력하고,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기록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
 - 무역행정문서 및 전자기록 교환을 위한 호환·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 개발 및 관련 협력(정보·경험 공유,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

제2.3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 ▶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국내법 체계를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 및 「UN 전자계약 협약(2005)**」의 원칙과 부합하도록 유지
 - *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 :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법원칙을 제시한 모델법
 - **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UN 협약(2005) : 국가간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관한 법적 장애제거 및 전자계약을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조약
 - 「UN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2017)*」 채택을 위해 노력
 - * UN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2017) : 종이문서 기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의 양도성 문서도 국내외적으로 유효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규범을 제시
- ▶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전자거래 관련 자국의 법체계 개발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

제2.4조. 물류

- ▶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미래 모빌리티 활용, 연합 물품보관소 (Federated Locker)** 등 새로운 배송 방식 및 물류 신산업 관련 우수 관행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
 - *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 물품이 수화인에게 도달하는 물류서비스 최종단계로, 배송시간·속도 등 소비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구간
 - ** 연합물품보관소(Federated Locker) : 수화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인택배함 등 의미

제2.5조. 전자송장

※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 :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 (제2.1조 정의)

- ▶ 당사국의 전자송장 관련 조치를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 등에 기초를 두도록 하여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
- ▶ 전세계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
- ▶ 기업들의 전자송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

제2.6조. 특송화물

- ▶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 통관 절차를 채택 및 유지
 - 특송화물의 도착 전 그 화물 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처리
 -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 등 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정보에 대한 단일 제출을 허용
 - 가능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서류만을 요구
 - 통상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통관서류 제출 후 6시간 내 반출
 - 특송화물의 중량·가격에 상관없이 적용

※ 단, 화물 반출의 조건으로 상품 중량·가격에 따른 신고서나 부가서류 제출, 관세 납부 등 정식 통관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 ▶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미소과세기준(de minimis)을 정하고, 해당 금액 미만의 화물에는 관세 또는 조세를 미부과
- 미소과세기준을 설정 시 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 효과, 위험관리, 행정비용, 무역 거래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세 징수 등 요소 고려
 - 단, 수입허가 등 제한 및 관리 대상 화물에는 미적용

제2.7조. 전자 지급

※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 :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 (제2.1조 정의)

- ▶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지급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며, 개별 당사국의 법과 규제에 따라 다음의 원칙을 인정
- 인·허가 절차와 요건,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규제를 공개하고, 적절한 기간 내 인·허가 완료를 위해 노력
 -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고려하도록 노력
 -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을 증진하고,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 및 결제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API를 제3자가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
 - *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규칙
 - 디지털 신원을 사용한 국경 간 인증 및 고객확인절차 이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
 - 전자지급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규제는 위험에 비례하고 상응
 - 규제 샌드박스, 산업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자지급 상품·서비스의 도입 촉진

3

[모듈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대우 및 관련 사안

제3.2조. 관세

-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

※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의미(제3.1조 정의)

- ▶ 단, 내국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은 부과 가능

제3.3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 :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을 및 그 밖의 제품을 의미 (개정의정서 제2조 정의)

- ▶ 당사국들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

[개정의정서 제3조로 대체]

-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및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음

- 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국제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내에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에 미적용
- 방송(broadcasting)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 개정의정서 제2조 : “방송”을 “국내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시각적·청각적 프로그램 신호의 수신·표시를 위한 기술을 통한 부호와 신호의 전송”이라 정의

▶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 다른 당사국 또는 제3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부여 가능

-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개정의정서 발효일 전에 서명 또는 시행중인 모든 양자·복수국 간 국제협정에 따른 경우
- 상기 국제협정에 따른 경제통합이나 무역자유화의 일부인 경우

◆ (예시) DEPA 당사국 A,B,C와 제3국 D가 있는 경우, A국은 C국 및 D국과의 기체결 협정에 근거하여 C국/D국의 디지털제품에 B국 디지털제품보다 유리한 대우 부여 가능

제3.4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 암호기법(cryptography) :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 또는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에 한정함 (개정의정서 제4조 정의)

▶ 당사국들은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

[개정의정서 제4조로 대체]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제조·판매·유통·수입·사용 등)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없음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제품의 예시로는 케이블 TV, 디지털 셋탑박스, 스마트 미터기, 휴대 통신단말기, 의료기기 등이 있음

- 암호기법과 관련한 특정 기술, 생산공정 또는 기타 정보(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설계 세부사항 등)에 대한 정보 이전 및 접근
- 자국 사업자와의 동업, 특정한 암호·알고리즘의 사용

▶ 다만,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 ▲금융기관·시장에 대한 감독·조사·검사 시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4

[모듈 4] 데이터 사안

제4.2조.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 포함)
(제1.3조 정의)

-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유지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 고려하되 다음의 원칙들을 포함
 - ▲수집제한, ▲데이터 질, ▲목적특정, ▲사용제한, ▲보안조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책임성 등
- ▶ 당사국 관할권 내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 타 당사국의 국민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
- ▶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제 방법과 기업의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 당사국의 상이한 체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매커니즘 개발을 추구하고, 관련 정보 교환
- ▶ 기업의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와 같은 신뢰마크 도입을 장려하고,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노력 및 관련 정보·경험 공유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 ▶ 당사국들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과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

[개정의정서 제5조로 대체]

-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개인 정보 포함)을 허용
- ▶ 당사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금지·제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 컴퓨터 설비(computing facilities) :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장치 (제4.1조 정의)

- ▶ 당사국들은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

[개정의정서 제6조로 대체]

- ▶ 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국 내의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할 수 없음
- ▶ 당사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 조치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5

[모듈 5] 보다 폭넓은 신뢰 환경

제5.1조. 사이버보안 협력

- ▶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
 -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담당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 ▲악의적 침입 및 악성코드 대응에 있어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활용, ▲상호 자격인정·다양성·평등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 개발

제5.2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 ▶ 디지털 경제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 *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multi stakeholder approach) : 인터넷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운영해나가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협력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접근방식
- ▶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

6 [모듈 6] 기업과 소비자 신뢰

제6.2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 인터넷 접속 서비스 공급자 또는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 (제6.1조 정의)

- ▶ ▲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이하 '스팸 메시지')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 스팸메시지 발신자로 하여금 수신자의 수신 거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 그 밖에 스팸 메시지 최소화를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
- 상기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마련
- ▶ 스팸메시지 규제와 관련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협력

제6.3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 ▶ 온라인 상업활동에서의 사기·오도·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상품·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법·규제를 채택·유지
 -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사기·오도·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 채택
 - '사기·오도·기만적 행위'는 ▲(재료품질·가격·수량·원산지 등에 대한) 왜곡허위표시 및 거짓 주장, ▲상품·서비스 공급 의도가 없이 광고, ▲비용 청구 후 상품·서비스 미제공, ▲소비자 승인없이 그의 계정에 청구·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
- ▶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 및 규제를 공개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절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
- ▶ 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활동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매커니즘의 유익함을 탐색 노력

제6.4조.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 ▶ 당사국의 정책·법·규정을 조건으로, 소비자가 다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장치(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 소비자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참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
 -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와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제3조)
 - (제공자의 의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서비스·기기 등 차단금지(제5조), △서비스 유형·제공자에 따라 트래픽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제6조), △스트래픽 관리방침 공개(제4조) 등 의무가 있음
 -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여(7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조치가 허용됨

7

[모듈 7] 디지털 신원

제7.1조. 디지털 신원

- ▶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한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체계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다음을 노력
 -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이나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수립·유지하고,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를 수립·유지
 - 각 당사국 디지털 신원의 법적·규제적 효과를 인정
 - 디지털 신원 관련 정책과 규제, 기술구현 및 보안표준, 우수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 교환
- ▶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위 사항에 불합치하더라도 채택·유지 가능

8

[모듈 8] 최신 동향 및 기술

제8.1조. 금융기술 협력

- ▶ 금융기술(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이러한 협력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을 노력
- ▲핀테크 분야 기업 간 협력 증진, ▲핀테크 솔루션 개발 촉진, ▲핀테크 분야 기업인·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협력 장려

제8.2조. 인공지능

- ▶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AI 거버넌스 체계) 개발의 중요성과 그러한 체계가 국제적으로 부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
- AI 거버넌스 체계의 채택을 증진하고, 해당 체계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인간중심적 가치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

제8.3조. 정부조달

- ▶ 개방·공정·투명한 정부조달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
- 조달 절차 및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정부조달 관련 국제적 합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협력 활동을 수행

제8.4조. 경쟁정책 협력

- ▶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 공유의 이익을 인정하고, 다음의 협력 활동을 고려
 -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경험 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에 대한 우수관행 공유, ▲경쟁정책 개발 및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훈련
- ▶ 통보, 협의, 정보교환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사안에 대해 협력

[참고]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협력 내용

- ◆ 우리 기체결 FTA는 경쟁 챕터에서 통보, 협의, 정보교환 등의 협력사항을 규정
 - (통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다른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보해야 함
 - (협의)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쟁 관련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간 협의를 개시
 - (정보교환) 다른 당사국의 요청 시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되, 상호 비밀을 유지

9

[모듈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제9.2조. 목적

- ▶ 지식의 생산자 및 이용자의 상호 이점을 위한 기술적 혁신, 창의성과 기술의 이전 및 보급의 중요성을 확인

제9.3조. 자유 이용 저작물

- ▶ 자유 이용 저작물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

※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 :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

제9.4조. 데이터 혁신

-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공유가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히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 하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업 간 공유 시 혁신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인정
-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체계, 개방형 면허 계약 등 데이터 공유 매커니즘이 다음을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함을 인정
 - ▲ 혁신·창의성 증진, ▲정보·지식·기술·문화 및 예술 확산, ▲경쟁 촉진 및 개방적·효율적 시장 육성
- ▶ 데이터 샌드박스를 포함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등 협력 노력

제9.5조. 공개 정부 데이터

※ 개방형 데이터(open data) :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적, 법적 특성을 갖추어 이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제9.1조 정의)

- ▶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 촉진의 유익함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개방형 데이터로서 정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 사업 기회 증진·창출을 위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협력하도록 노력하며, 그 협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
 - 개방형 데이터세트가 기술이전, 인재양성 및 혁신 촉진에 사용되어 국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확인
 - 개방형 데이터세트를 기초로 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장려
 - 공공 라이선스 형태를 한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의 사용 및 개발을 강화

10 [모듈 10] 중소기업 협력

제10.1조. 원칙

- ▶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과 중소기업 협력에서 민간 분야의 필수적 역할을 인정
- ▶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성장 증진 위해 협력

제10.2조.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 무역·투자 기회 증대 협력

- ▶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기회 증대를 위해 다음의 협력을 강화
 - 자본 및 신용, 정부조달 기회 등에 중소기업의 접근성 및 참여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및 기술 활용과 관련한 정보 및 우수관행 교환
 -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여 해외 공급·구매자 및 사업 파트너와 연결될 수 있도록 권장

제10.3조. 정보 공유

- ▶ 대중이 무료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개설·유지하여 협정문안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타 당사국의 유사한 웹사이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단체의 웹사이트에 접근 가능한 링크 및 정보*를 포함
- * 통관규정, 데이터이전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지식재산권, 디지털무역 관련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 수출입 관련 위생·식물위생조치, 무역 증진 프로그램, 정부조달,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
- ▶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의 최신성,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영어로 정보를 제공

제10.4조.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

- ▶ 민간분야,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를 개최
 - 중소기업의 혜택 증진 및 협력 노력·이니셔티브 증진
 -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를 위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존의 플랫폼 및 회의 (WTO, APEC 등)와 연계한 대화 개최 가능

11

[모듈 11] 디지털 포용

제11.1조. 디지털 포용

- ▶ 여성, 지방인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원주민의 디지털 경제 참여 등 디지털 포용 관련 사안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협력
 - 전문가 교류 등 디지털 포용에 대한 경험 및 우수관행 공유
 - 디지털 경제 기회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모든 집단의 디지털 경제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경제 참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지표사용, 통계분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공유
- ▶ 상기 협력 활동은, 당사국의 기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교육기관, 비정부 기구 등의 협력에 의해 수행 가능

12

[모듈 12] 공동위원회와 연락처

제12.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 ▶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

제12.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 ▶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운영(부속기구 설치, 가입조건 등) ▲협정의 개정·수정, ▲협정 이행을 위한 약정 개발, ▲분쟁해결 절차규칙 수립·개정, ▲그 밖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치 수행

제12.3조. 의사결정

- ▶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며, 회의에 참석한 어떠한 당사자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컨센서스에 의한 것으로 간주

제12.4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 ▶ 공동위원회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내, 그 후에는 필요할 때 회합하며, 각 당사국이 순차적으로 회합을 주재
 - 주재국은 회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통보
- ▶ 공동위원회 및 부속기구의 업무수행은 전자우편 및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절차 규칙 수립 가능

제12.5조. 협력과 이 협정의 이행

- ▶ 이 협정의 이행을 활성화하고 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
 - 협력 활동은 규제기관·담당 공무원 간 정보교환·대화, 상호인정·동등성과 같은 공식 협력 등을 포함
 - 당사국 간 협력 활동에 대한 세부 약정을 체결 가능
- ▶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협정 이행 계획 및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제공

제12.6조. 연락처

- ▶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협정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타 당사국에 이를 통보
 - 공식 발효일 이후 협정이 발효되는 당사국의 경우,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담당자를 통보

13

[모듈 13] 투명성

제13.2조. 공표

- ▶ 각 당사국은 이 협정 적용대상 사안과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 모든 인(자연인·기업)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행정판정 또는 해석

- 단,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의 사람·상품·서비스에 대한 행정·준사법적 결정·판정, 또는 특정 행위·관행에 대한 판정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13.1조 정의)

-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상기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

제13.3조. 행정 절차

- ▶ 이 협정과 관련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가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당 조치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

- ▲ 해당 절차에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의 인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설명 등 통지 및 최종 행정 처분 전에 의견 표명 기회를 제공, ▲ 각 절차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할 것

제13.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와 정정을 위해 사법·준사법·행정 재판소 및 관련 절차를 수립·유지
 - 상기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부서 및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 해당 절차의 당사국들에게 입장 표명 및 방어 기회를 제공하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

제13.5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 ▶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및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 해당 조치를 통보하고 다른 당사자의 요청시 해당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

14

[모듈 14] 분쟁해결

제14.2조. 목적

-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합의 노력, 협정상 모든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협의
 - 이 모듈은 당사국간 협의와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 제공 목적

제14.3조. 적용범위

- ▶ 이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당사국간 분쟁의 방지·해결,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다른 당사국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것을 제외)
 - * 모듈14(분쟁해결)은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의정서 제7조로 대체 : 부속서 14-가 예외 삭제]

제14.4조. 주선 및 조정

- ※ 주선(good offices) : 제3자(제3국, 국제기구, 혹은 저명한 인사)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에 임하도록 알선(intercession) 하는 것
- 조정(conciliation) :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기초된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대체로 보고서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

- ▶ 주선 또는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비밀로 함
- ▶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 중재판정부에서 분쟁해결 절차 진행 중에도, 주선 또는 조정이 계속될 수 있음

제14.5조. 중개

- ▶ 부속서 14-나에서 중개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

제14.6조. 중재

- ▶ 부속서 14-다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
- 공동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수립

제14.7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 ▶ 어떤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WTO 협정 등 분쟁당사국들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신청 당사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 가능
- 신청 당사국이 어느 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한 경우, 다른 절차는 배제

15

[모듈 15] 예외

제15.1조. 일반적 예외

▶ 1994년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 나호 조치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 포함, ▲제20조 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무생물·천연 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됨을 양해
- GATS 제14조 나호 조치가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 포함됨을 양해

▶ 당시국은 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장소, 국가적 가치를 지닌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집행할 수 있음

* 창작 예술 : 공연예술·시각예술 및 공예·문학·영화 및 비디오·언어 예술·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토착적 전통 관습 및 현대적 문화 표현물·디지털 양방향 매체·훈성 예술 포함

- 단,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함

제15.2조. 안보 예외

▶ 다음의 경우, 국가 안보상의 예외 조치 적용 가능

- 공개 시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당시국이 결정한 정보의 비공개
-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제15.3조. 와이팅이 조약

- ▶ 와이팅이(Waitangi) 조약상의 의무 이행을 포함, 마오리족에 대해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채택 허용
 - 단,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 ▶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는 와이팅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와이팅이 조약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듈 14(분쟁해결)는 이 조항에 적용되며,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의 권리에 대한 불합치 여부만을 판단

제15.4조. 건전성 예외와 통화 및 환율 정책 예외

- ▶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보장을 위한 조치 등 건전성 사유*를 위한 조치 채택·유지 가능
 - * 건전성 사유 : 지급 및 청산제도의 안전성 및 금융·운영상 완전성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 국경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금융 책임의 유지 포함
- ▶ 이 협정은 통화·신용·환율정책의 추진을 위한 비차별적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제2.7조(전자지급)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건전성·완전성 및 금융 책임의 유지를 위해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송금 금지·제한 가능

제15.5조. 과세 예외

- ▶ 이 협정은 당사국의 조세 또는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음
 - 이 협정은 조세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 불일치 시 조세협약이 우선
- ▶ 둘 이상의 당사국 간 조세협약의 경우, 조세협약과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당사국들의 지정 당국에 회부
 - 지정 당국은 6개월(합의 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 불일치의 존재 및 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모듈 14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
 - 과세조치 관련 분쟁 검토를 위해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지정 당국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용

제15.6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 ▶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품 무역의 경우, 1994년도 GATT 및 WTO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른 제한적인 수입조치 채택 가능
 - 서비스의 경우, GATS에 따른 거래에 대한 지불·송금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유지 가능
 - 투자의 경우, 자본 계정·금융 계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송금에 대해 제한 채택·유지 가능
- ▶ 단, 서비스·투자 관련 제한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되고, ▲다른 당사국들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가 적용되도록 보장
- ▶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필수적인 경제 분야에 대한 제한의 범위 우선 지정 허용
 - 제한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당사국들에 통보되고, 통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 개시

16

[모듈 16] 최종규정

제16.1조. 기탁처

- ▶ 이 협정의 기탁처는 뉴질랜드로 지정하며, 기탁처는 이 협정 및 개정사항의 인증 등본을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
- 기탁처는 이 협정의 서명국과 가입국들에게 ▲협정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각자의 협정 발효일, ▲탈퇴를 통보

제16.2조. 발효

- ▶ 이 협정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서명국들이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서명국의 경우, 그 서명국이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제16.3조. 개정

- ▶ 당사국은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 개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개정의 승인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날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

제16.4조. 가입

- ▶ 이 협정은 당사국 간 합의되고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개방됨
- ▶ 공동위원회가 제12.2조 가호에 따라 가입 조건을 승인하고 가입 후보가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하는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가입 후보가 가입 조건 수용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 할 수 있는 기간 명시(당사국 간 합의로 기간 연장 가능)
 - 가입 후보는 ▲가입 조건 수용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모든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협정의 당사자가 됨

제16.5조. 탈퇴

- ▶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 가능하며, 기탁처가 탈퇴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 발생

제16.6조. 정보의 공개

-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공개 시 자국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제16.7조. 비밀유지

- ▶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음
 - 단, 법적 요건 준수 및 사법적 절차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나, 공개 전 정보 제공 당사자와 협의

제16.8조. 부속서 및 각주

- ▶ 이 협정의 부속서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제16.9조. 전자 서명

- ▶ 이 협정에 전자적 서명이 가능하며, 이는 국제법상 조약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

IV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

- ▶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전송),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 간 어떠한 권리·의무도 창설하지 않음

☞ 개정의정서 제8조에 의해 삭제

V

개정의정서

구분	제목	주요내용
서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 협정문의 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합의한 협정문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함
1조	1.1조(범위)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항 및 2항은 기존 협정문과 동일 · [3항(신규)] 당사국이 디지털 경제의 교역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권리·이익·의무·책임을 보호 또는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deems necessary) 조치의 채택 및 유지에 대해서는 4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2조	3.1조(정의)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3에 '디지털제품', '전자적전송' 외에 '방송'의 정의 추가 · [broadcasting(신규)] : 국내 대중에 청각·시각 프로그램 신호를 수신 및 표시하기 위하여 기술을 통한(via any technology) 부호 또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
3조	3.3조(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항은 기존 협정문과 동일 · [5항(신규)] (a) 개정의정서 발효일 이전에 시행 또는 서명된 모든 양자·복수국간 국제 협정에 따라, 또는 (b) 그 협정에 따른 경제통합이나 무역자유화의 과정의 일부로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음
4조	3.4조 (임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
5조	4.3조 (국경 간 정보전송)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
6조	4.4조 (컴퓨터설비 위치)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
7조	14.3조(분쟁해결 적용범위)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모듈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4개 조항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
8조	협정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14-가[모듈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부속서 1(0) 협정에 대한 양해]는 운영 중단
9조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의정서는 마지막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 ·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에 의해 전자적으로 서명 가능(국제법상 조약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 · 동 개정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제1조 (제1.1조 적용범위와 일반규정 대체)

※ 제1.1조 3항은 뉴질랜드 원주민(마오리족) 관련 민감성(헌법상 의무)을 반영하여 추가

- ▶ [제1.1조 3항(신규)]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제3.3조), 암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제3.4조), 국경 간 정보전송(제4.3조), 컴퓨터 설비 위치(제4.4조) 조항은 디지털 경제 무역과 관련한 원주민의 권리·이익·의무·책임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여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해당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수단이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

제2조 (제3.1조 정의 대체)

- ▶ [방송 정의(신규)] 국내 대중에 청각·시각 프로그램 신호를 수신 및 표시하기 위하여 기술을 통한 부호 또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

제3조 (제3.3조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대체)

- ▶ [제3.3조 5항(신규)]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 다른 당사국 또는 제3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부여 가능
-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개정의정서 발효일 전에 시행 또는 서명된 모든 양자·복수국 간 국제협정에 따른 경우
 - 상기 국제협정에 따른 경제통합이나 무역자유화의 일부인 경우

제4조 (제3.4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제품 대체)

※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삭제) →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

▶ (의무화)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제조·판매·유통·수입·사용 등)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없음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의 예시로는 케이블 TV, 디지털 셋탑박스, 스마트 미터기, 휴대통신단말기, 의료기기 등이 있음

- 암호기법과 관련한 특정 기술, 생산공정 또는 기타 정보(비밀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설계 세부사항 등)에 대한 정보 이전 및 접근
- 자국 사업자와의 동업, 특정한 암호·알고리즘의 사용

▶ 다만,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 ▲금융기관·시장에 대한 감독·조사·검사 시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제5조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대체)

※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삭제) →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

▶ (의무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개인정보 포함)을 허용

▶ 당사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금지·제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제6조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대체)

※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삭제) →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

- ▶ (의무화) 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국 내의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할 수 없음
- ▶ 당사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 조치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제7조 (제14.3조 적용범위 대체)

- ▶ (변경) 이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및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 분쟁해결의 대상
- ※ 당초 분쟁해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4개 조항(제3.3조(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제3.4조(암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 제4.3조(국경 간 정보전송), 제4.4조(컴퓨터 설비 위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

제8조 협정 부속서

- ▶ 부속서 14-가(분쟁해결의 적용범위),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의 운영이 중단됨

제9조 일반규정

- ▶ 이 의정서는 마지막 DEPA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협정의 기탁처(뉴질랜드)에 통보한 후 60일 째 되는 날에 발효됨
- ▶ 이 의정서는 전자적으로 서명 가능하며,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함
- ▶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